

1. 개정이유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(2019.10.31.)됨에 따라 산림청장이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·훈련 등을 전문교육기관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그 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전문교육기관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(안 제7조의3제1항)

- 1) 산림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·훈련 등을 위탁할 경우 협약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

나.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서식 신설(안 제30조의2)

- 1)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신청기관은 법인명, 설립일, 소재지 등이 기재된 별지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
- 2)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산림청장의 직인이 찍힌 별지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. 31. ~ 3. 31.)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의 제목 “(교육·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)”를 “(교육·훈련등의 위탁 및 프로그램의 신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·훈련 및 상담·자문·지도 프로그램(이하 “교육·훈련등 프로그램”이라 한다)”을 “교육·훈련등 프로그램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산림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·훈련 및 상담·자문·지도(이하 “교육·훈련등”이라 한다)를 협약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) ①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.

- ②영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.

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

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개월
신청인	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	법인 설립일
	소재지	전화번호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3제1항 및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시설 명세서 1부 4. 관련 업무 수행 실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 증명서	

동 의 서

산촌 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활용을 목적으로 신청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수집·이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	→	검 토	→	지정여부 결정	→	결과 통보
						처리기관 : 산림청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제 호

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

법 인 명 :

법인등록번호 :

대표자 성명(생년월일) : ()

주 소 :

전화번호 :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3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의 법인을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하였으므로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산림청장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3(<u>교육 · 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</u>) <신 설>	제7조의3(<u>교육 · 훈련등의 위탁 및 프로그램의 신고</u>) ① <u>산림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 · 훈련 및 상담 · 자문 · 지도(이하 “교육 · 훈련등”이라 한다)를 협약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<u>교육 · 훈련 및 상담 · 자문 · 지도 프로그램(이하 “교육 · 훈련등 프로그램”이라 한다)</u> 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<u>교육 · 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</u>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산림청장</u>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교육 · 훈련등 프로그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 <신 설>	1. ~ 5. (현행과 같음) 제30조의2(<u>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</u>) ① <u>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.</u> ② <u>영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</u>

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.